보험약관

반려동물 실손의료비보험 (무)펫퍼민트 Puppy&Family보험 다이렉트2408

판매버전 2.0

판매개시 2024. 10. 2

※본 약관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Petpermint

무배당 펫퍼민트 Puppy&Family보험 다이렉트2408 특별약관

1.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 소유의 보험 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				
수익자	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 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반려동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하 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한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개(犬)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개(犬)는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보험가입 당시의 연령이 생후 60일 이하또는 만 8세(단, 실속형의 경우 만 10세)를 초과하는 개(犬) 2.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犬) 3.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목적의 개(犬)(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犬) 5.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개(犬)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이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발생하는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말합니다.

③ 보상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가입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
금액	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자기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
부담금	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 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연단위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
복리	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
	니다.
 평균공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이율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평균
미	공시이율은 2.75%입니다.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
계약자적	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
립액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
에크린 _田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원리금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원리금 : 110원 + (110원 × 10%) = 121원

5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
	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6 보험료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보험료	로 기본계약 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에는 특별약관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 및 별거 중인 미혼자녀
- ② 위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 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진료 항목별 영수 금액 포함),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X-ray 등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진(촬영일자 및 시간 필수)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 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 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 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 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 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절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펫퍼민트 ID카드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반려동물 치료비 결제 시에 보험금이 당사로 자동 청구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 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 내에서 정합니다.

- ① 소송제기
- ② 분쟁조정 신청
- ③ 수사기관의 조사
-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⑤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⑥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분쟁의 조정」조항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9조(알릴 의무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의 수의사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동일한 반려동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지급보험금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금액을 초과할때에는 아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이 계약의 지급보험금부담한 총×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비용금액지급보험금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따른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8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 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반려동물을 양도할 때
- ④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 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험변경시 해약환급금 정산】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이를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 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 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 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

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 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 图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1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반려동물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반려동물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 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반려동물이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반려동물이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 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 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반려동물이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 및 반려동물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① 보험종목
- ② 보험기간
- ③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④ 계약자. 피보험자
- ⑤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 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가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 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 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 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험나이 등)

-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 및 반려동물의 나이는 만나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만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 및 반려동물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 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반려동물의 나이 및 품종에 관한 청약서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및 품종에 해당하는 보 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다만, 반려동물의 나이 및 품종이 정정되기 이전에는 「나이 및 품종이 정정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의 「나이 및 품종이 정정된 후에 적용해 야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 급합니다.

제1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1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가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다음날에 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다만, 해제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 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 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 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①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1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 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 5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1.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 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 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2.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 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게 됩니다.

제2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보통약관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2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①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이하「갱신일」이라 합니다)에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갱신될 계약(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 ② 갱신일에 있어서 반려동물의 만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내일 것
- ③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④ 갱신전 계약이 소멸되지 않을 것
- ②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의 반려동물의 만나이로부터 갱신종료만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갱신제한 사유 및 제3항의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시1) 계약일 : 2020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 10월 1일 예시2)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월 말일

제23조(준용규정)

이「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적립부분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8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통원	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의료비	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6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6만원 1만원) × 8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2만원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00만원-1만원) × 80%. 200만원] 중 적은금액
 - = 2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기본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7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통원	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의료비	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21만원
 - = [(21만원 1만원)×7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4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00만원-1만원)×70%, 200만원] 중 적은금액
 - = 2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③ 실속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3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통원	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0만원
의료비	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1만원 1만원)×50%, 10만원] 중 적은금액 = 5만원
-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00만원-1만원) × 50%. 150만원] 중 적은금액
 - = 15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
-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⑧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 생한 손해
-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 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①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②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 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 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 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 라 감염, 필라리아(심장사상충)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 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 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 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① 서혜부허니아(서혜부탈장),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 ⑪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 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② 한의학(단, 침술을 제외합니다.), 인도 의학, 허브요 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재활치료
- ③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 (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④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

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우송비 포함)
- 18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 스케일링, 발치 등을 포함한 치아의 치과치료비용 (단,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 보장(구강질환의 치료 목적임에도 치아에 행해지는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 다))
- ②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③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수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조치,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②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 병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특별약관의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2.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8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입원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의료비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6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6만원 1만원) × 8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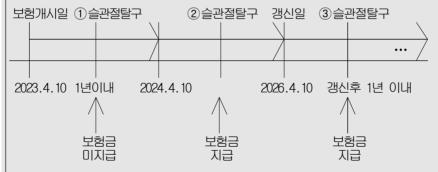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00만원-1만원) × 80%. 200만원] 중 적은금액
 - = 2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기본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7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입원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의료비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2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21만원 1만원) × 7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4만원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00만원-1만원)×70%, 200만원] 중 적은금액
 - = 2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③ 실속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3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입원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0만원
의료비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1만원 1만원) × 50%, 10만원] 중 적은금액
 - =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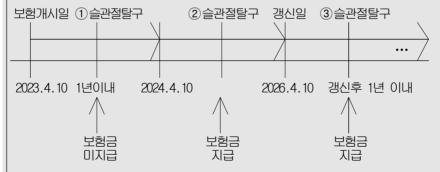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0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00만원-1만원) × 50%. 150만원] 중 적은금액
 - = 15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
-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⑧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 생한 손해
-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 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①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②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 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 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 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 라 감염, 필라리아(심장사상충)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 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 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 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① 서혜부허니아(서혜부탈장),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 ①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 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② 한의학(단, 침술을 제외합니다.), 인도 의학, 허브요 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재활치료
- ③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 (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④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

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b)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우송비 포함)
- 18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 스케일링, 발치 등을 포함한 치아의 치과치료비용 (단,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 보장(구강질환의 치료 목적임에도 치아에 행해지는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 다))
- ②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③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수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조치,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②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 병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수의사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병원에 입실하여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3.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1,000만원)을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8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통원 의료비	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H	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6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6만원 1만원) × 8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2만원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10만원-1만원) × 80%. 250만원] 중 적은금액
 - = 25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기본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1,000만원)을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7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통원 의료비	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2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21만원 1만원) × 7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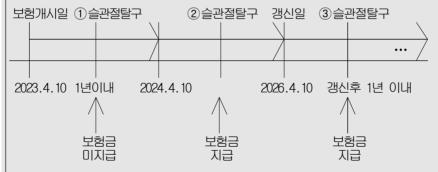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10만원-1만원) × 70%. 250만원] 중 적은금액
 - = 25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③ 실속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통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지급 한도
통원 의료비	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0만원
의 표 UI 	통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통원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1만원 1만원)×50%, 10만원] 중 적은금액 = 5만원
- ② 통원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10만원-1만원) × 50%. 200만원] 중 적은금액
 - = 200만원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
-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⑧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 생한 손해
-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 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①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②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 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 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 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 라 감염, 필라리아(심장사상충)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 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 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 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 ⑪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 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② 한의학(단, 침술을 제외합니다.), 인도 의학, 허브요 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재활치료
- ③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 (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4)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5)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⑰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우송비 포함)
- №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③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수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조치,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②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 병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4.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고급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1,000만원)을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8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입원 의료비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u> </u>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6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16만원 1만원) × 8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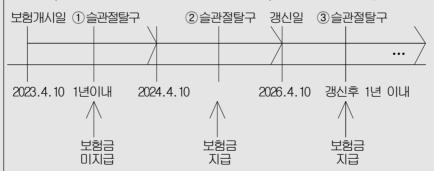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8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10만원-1만원) × 80%. 250만원] 중 적은금액
 - = 25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기본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1,000만원)을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7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입원 의료비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5만원
J II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2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21만원 1만원) × 70%, 15만원] 중 적은금액
 - = 14만원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7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10만원-1만원)×70%, 250만원] 중 적은금액
 - = 25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 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③ 실속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내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게 치료를 받은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보험금을 1일당 제2항에서 정한지급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각 항목별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각각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을 곱한 금액을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항목		자기부담금	지급 한도
입원 의료비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만원/2만원 /3만원 중	1일당 10만원
1 H II	입원 중 수술을 한 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보험금 지급금액 산출방식】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지급 한도액] 중 적은 금액

【보험금 지급금액(자기부담금 1만원인 경우)[예시]】 ① 입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11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11만원 1만원)×50%, 10만원] 중 적은금액
 - =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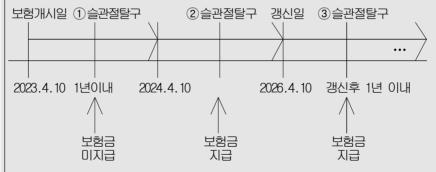
② 입원 중 수술을 한 경우(보상비율 50%)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 치료비 410만원
- · 보험금 지급금액
 - = [(410만원-1만원) × 50%. 200만원] 중 적은금액
 - = 2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 부전(대퇴 골두 허혈성 괴사 포함) 등 보장예시】



- ※ 설명
 - ①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 ③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슬관절탈구 : 보험금 지급

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 대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반려동물이 제1항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비는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⑥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 한 질병 및 상해
- ⑦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⑧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 생한 손해
- ⑨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 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 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①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②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 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 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 라 감염, 필라리아(심장사상충)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 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 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 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 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 ⑪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 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② 한의학(단, 침술을 제외합니다.), 인도 의학, 허브요 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재활치료
- ③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 (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4) 반려동물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5)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⑥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⑩ 마이크로 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 (우송비 포함)
- ⑩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③ 제2항에 정하는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 우, 제2항에 정하는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계약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수의사가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 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 강경검사 등)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②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 병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수의사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병원에 입실하여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 을 따르고,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Ⅱ.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 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
용어	정의
JI OF TI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
계약자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H청조긔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
보험증권	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
피보험자	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② 알릴의무 관련 용어

	T
용어	정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
	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중요한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사항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보상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 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 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 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배상책임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
	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
배상책임	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
	외합니다.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
보상	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한도액	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
	합니다.
TIDI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
자기	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
부담금	합니다.
보험금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
	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분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רוו טו ד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대위권	권리를 말합니다.

4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 니다.
계약자 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약 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원리금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원리금 : 110원 + (110원 × 10%) = 121원

5 기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
	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6 보험료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료	계약에서 정한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		
工品五	료를 말합니다.		

제3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 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 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 ②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③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 송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 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

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명하는 서류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제6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 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특별약관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따른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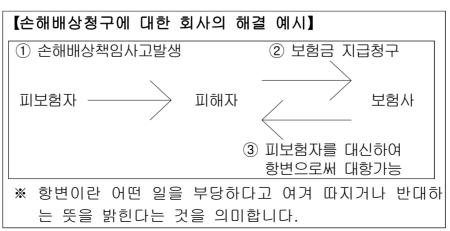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

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로 증가된 손해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 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에 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 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 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 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 게 초과하는 때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은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 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 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2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 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 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 항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③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 로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 전일릴 의무 위반 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 항에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① 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이하「갱신일」이라 합니다)에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갱신될 계약(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 ② 갱신일에 있어서 반려동물의 만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내일 것
- ③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④ 갱신전 계약이 소멸되지 않을 것
- ②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의 반려동물의 만나이로부터 갱신종료만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갱신제한 사유 및 제3항의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시1) 계약일 : 2020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 10월 1일 예시2)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월 말일

제1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6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 및 제38 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 권에 기재된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 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그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 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 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 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 및 별거 중인 미혼자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 다.

- 1. 8촌이내의 혈족
- 2. 4촌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 ③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4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①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 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 용
 -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 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 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②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 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미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9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5 제4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① 제4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 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 3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배상책임 손해액을 보 상합니다.
 - ② 제4항 제2호 ③, © 또는 ◎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③ 제4항 제2호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 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의 고의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⑥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 ①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 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⑧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 ⑨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⑪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⑫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③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4) 가입 반려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5) 가입 반려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반려동물 비용손해 관련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단,「반려동물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Ⅲ. 기타 특별약관

1.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①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펫퍼민트 Puppy&Family보험 다이 렉트2408 특별약관 중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이하「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이라 합니다)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이하「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아래의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 ·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 ·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입원의료비II보장 특별약관
- · 갱신형 펫퍼민트 반려견 배<u>상책임보장 특별약관</u>

제2조(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자동갱신)

① 보장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보장계약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이하「갱신전 보장계약」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이하「갱신일」이라 합니다)에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합니다.

- ① 갱신될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이하「갱신보장계약」 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 의 범위 내일 것
- ③ 보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 을 것
- ② 갱신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자동갱신 적용)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 보험

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 보장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제2조(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1항의 갱신보장계약 보험료에 대 하여 갱신대상 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 내하여 드립니다.

제4조(갱신보장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보장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가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다음날에 이 보장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다만, 해제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장개시)

제2조(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보장계약의 보장개시는 갱신일 당일부터 개시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반려동물 특정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반려동물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부가할 때 반려동물의 과거 병력과 수의학적으로 또는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있게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관련이 있는 특정질병으로 제한하며, 부담보 설정 범위 및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④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특정질병」이라 합니다)(【별첨(특정질병 분류표(반려견))】)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하 「부담보기간」이라 합니다)은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1개월부터 5년」또는 「계약의 보험기간」(단,계약이 갱신 또는재가입 계약인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종 갱신 또는 재가입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이하 「계약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며,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다만,각각의 질병의 상태등에 대한 수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보험계약(이하 「유사계약」이라 합니다)이 계약 청약일 현 재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 사계약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계약의 부담 보 기간을 적용하고. 유사계약에서 정한 질병과 동일하거나 축소된 범위로 계약의 부담보 설정 범위를 정하며, 유사계 약이 다수인 경우 반려동물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적 용합니다. 단. 계약 청약일 현재 부담보 기간을 「계약의 보 험기간 으로 적용한 유사계약이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 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 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계약의 보험기간」이내에서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적용하며, 유사계약 청약일 이후 제1 항에서 정한 질병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재진단ㆍ치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 장이 추가(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보장 범위의 변경 또 는 확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제1항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진단 확정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반려동물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인지 아닌지는 수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를 준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별첨 】 특정질병 분류표(반려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반려동물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지 않는 질병을 분류한 표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질병(부담보 질병)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따라 직접 관련이 있는 특정질병으로 제한합니다.

구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목명		
		DA02	십자 인대 손상 파열 (전방 / 후방)		
		DA03	고관절 이형성증 / (아) 탈구		
		DA04	외상성 고관절 (아) 탈구		
		DA05	골절 (뒷다리)		
		DA06	무혈성골두괴사(LCPD)		
		DA07	관절염 (뒷다리)		
		DA08	관절염·퇴행성 관절염 (뒷다리)		
	뒷다리 근골격계	DA09	뒷다리의 뺴 연골증(팔꿈치 돌기 유합 부전/ 박리성		
1		DA10	뒷다리의 근염		
	질환	DA11	뒷다리의 염좌		
		DA12	뒷다리의 골육종		
		DA13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뒷다리 근골격계 종양		
		DA14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뒷다리 근골격계 질환		
		DA16	슬개골 (아) 탈구- (좌측-1기)		
		DA17	슬개골 (아) 탈구- (좌측-2,3,4기)		
		DA18	슬개골 (아) 탈구- (우측-1기)		
		DA19	슬개골 (아) 탈구- (우측-2,3,4기)		
		FA01	결막염 (결막 부종 포함)		
		FA02	건성 각결막염 · KCS		
		FA03	외상성 각막염		
		FA04	궤양성 각막염 · 각막궤양 (각막 미란 포함)		
		FA05	각막 이영양증		
		FA06	포도막염 (홍채염 / 전안방 출혈 포함)		
	눈 및 부속 기관의 질환	FA07	녹내장		
		FA08	수정체 (아) 탈구		
		FA09	망막 변성 / 망막 위축 / PRA		
		FA10	망막 박리 (유리체 변성 포함)		
		FA11	체리아이 · 제3안검 돌출		
		FA12	안검 외반		
2		FA13	안검 내반		
		FA14	안검염		
		FA15	다래끼 / 산립종 / 마이봄선종		
		FA16	비루관폐쇄		
		FA17	눈곱 (원인 불명)		
		FA18	눈 가려움증 (원인 불명)		
		FA19	눈 및 부속 기관의 종양		
		FA20	유루증		
		FA21	동양안충증		
		FA22	백내장		
		FA23	속눈썹의 질병 (첩모난생 / 첩모중생 / 이소성첩모)		
		FA24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각막염 (판누스 포함)		
		FA25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안과 질환		
3	순환기 질환	JA01	판막 질환(의증, 심잡음, 심부전 증상 포함)		

구 분	특정질병	분류코드	항목명
正		JA02	판막 질환 (심부전 증상)
		JA03	원인 불명의 심비대
		JA04	심근증
		JA05	부정맥
3	순환기	JA06	대동맥 협착증 AS
	질환	JA07	폐동맥 협착 PS
		JA08	순환계 종양
		JA14	심장사상충증
		JA15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심혈관계 질환
		JA17	상기에해당하지않는선천성심장질환(확진된)
		GA02	신장결석
		GA03	신우 신염
		GA05	방광염
		GA06	방광 결석
4	비뇨기과	GA07	요도 폐색
4	질환	GA08	요로 결석증
		GA09	신경성 배뇨 이상
		GA10	비정상 성분의 소변 (원인 불명)
		GA11	비뇨기계 종양
		GA12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뇨기 질환
		BA01	외이도염 (세균성)
		BA02	외이도염 (말라세지아)
		BA03	외이도염 (알러지성)
		BA04	외이도염 (원인 불명)
		BA06	중이염
		BA07	내이염
		BA09	귀 가려움증 (원인 불명)
		NA01	농피증 / 세균성 피부염
		NA02	말라세지아 피부염
		NA03 NA04	피부 사상균증 · 곰팡이성 피부염 모낭충증
		NA04 NA05	식이 알러지
		NA05	알러지 피부염 (항원 특이적)
		NA07	아토피 (만성 피부염)
		NA08	지간 피부염
		NA09	피부염 (원인 불명)
5	피부질환 -	NA10	지루성 피부염
	1 1 2 C	NA11	피하 농양
		NA12	지방층염
		NA13	피부의 가려움증 (원인 불명)
		NA14	탈모 (원인 불명)
		NA15	발톱 주위염
		NA17	피부 종양 (상세미상)
		NA18	지방종
		NA19	조직구종 (피부)
		NA20	비만세포종 (피부)
		NA21	흑색종
		NA22	피부 림프종
		NA23	항문주위선종 (항문주위선암종)
		NA24	옴진드기 · 개선충
		NA25	벼룩 / 진드기 등 외부 기생충 질환
		NA26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피부의 종양
	NA27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피부 질환	

IV. 별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5항, 제10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장관련 보험금 (보통약관 제3조) (특별약관이 부가된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금 포함)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만기환급금(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및 해약환급금 (보통약관 제35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보장]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보장]공시이율의 40%
제2항)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포함)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회사가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 간은 [보장]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일 자 계산합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

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